

## ACP 법률안 국회 통과, 자유로운 변호인 조력의 새로운 장 "효과적 방어권 행사를 위한 고려사항 Q&A"

### 입법 배경 및 경과

#### 1. 들어가며: 왜 'ACP(Attorney Client Privilege)'인가

그동안 우리 법제에서는 변호사에게 '비밀유지의무'만 있을 뿐, 정작 비밀의 주인인 **의뢰인이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비공개를 주장할 권리**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과 전략이 압수수색의 타겟이 되는 '방어권의 역설'이 발생해 왔습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도 변호사와 교환한 의견, 변호인의 업무 성과물들이 외부에 공개될 우려를 덜고, 좀 더 자유롭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ACP 도입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무상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2. 해외 사례

미국은 판례를 통해 ACP를 형성하여 왔으며, 연방증거법 제502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ACP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완전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sup>1)</sup>.

영국은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변호사 특권(legal professional privilege)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법률자문 비밀보호(legal professional privilege)를 인정하고 있어, OECD 회원국 대부분이 ACP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Related Areas

송무

### Contact

이시원 변호사

02-528-6147  
shiwonlee@yulchon.com

김승호 변호사

02-528-5433  
sunghokim@yulchon.com

공준혁 변호사

02-528-5293  
jhkong@yulchon.com

이승현 변호사

02-528-5538  
seunghyunlee@yulchon.com

전제희 변호사

02-528-5377  
jhjeon@yulchon.com

1) 미국의 ACP 관련 내용은 본 서면 말미에 참고자료로 수록하였습니다.

### 3. 국내 논의 경과

ACP 제도의 도입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2024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커뮤니케이션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 비공개 권리**(변호사법 제26조의2 제1항)와 **수임 사건 관련 업무성과물 비공개 원칙**(같은 조 제2항)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2025. 12.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 1. 29.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특히, 논의 초기에는 변호인 작성 서류 등에 대해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고 서류나 자료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개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외를 통해 ACP가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이로써 ACP로 보호받는 정보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 개정 변호사법의 주요 내용

### 1. 조문 구조 개관

구분	주요 내용	유의점
제26조의2 제1항	<b>의사교환의 보호</b> 변호사-의뢰인(의뢰인이 되려는 자 포함)간 비밀로 이루어진 의사교환 비공개	수임계약 체결 이전의 상담단계도 포함 (수임여부 불문)
제26조의2 제2항	<b>업무성과물의 보호</b> 수임 이후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해 변호사가 작성한 업무성과물 비공개	수임한 사건의 변호사 작성 자료
제26조의2 제3항	<b>예외 사유</b> 의뢰인의 승낙, 범죄 관여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 변호사의 자기방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향후 판례를 통한 구체화 필요
부칙 제1조 제2조	<b>시행일 적용례</b>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단,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업무성과물에도 적용	시행일 전까지 ACP 대상 문서 선별·정리 필요

### 2. 개정에 따른 변화

구분	현행	개정법
권리 주체	권리가 아닌 변호사의 의무로서 비밀유지 의무 규정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의 권리로 명시

구분	현행	개정법
보호 범위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받아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거부, 알게 된 사실에 대한 증언거부 (형사소송법 제112조, 제149조)	<u>현행 보호 범위에 더하여, ① 의사교환 내용 전반 ②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자료까지 확대</u>
시기적 한계	종래 대법원은 <u>수사나 공판 등 형사절차 개시 전 단계</u> 에서 작성된 문건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권으로 <u>보호받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u> 판시(대법원 2009도6788 전합 판결)	<u>수임 전 상담 단계부터(의뢰인이 되려는 자 포함) 형사절차 개시 여부 불문하고 보호</u>

## Key Focus: 실무자를 위한 상세 Q&A

### Q1. ACP는 변호사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A1.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ACP가 변호사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제 압수수색 또는 행정조사 현장에서 의뢰인 역시 '이 자료는 변호사와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 Q2. ACP는 형사절차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A2. 아닙니다. 행정조사단계 및 이후 행정·민사소송 등에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및 행정소송 등에 있어 해당 문건이 이미 현출되었다면 ACP에 위배된다는 주장만으로 증거능력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Q3. 공정위나 금감원, 국세청, 지식재산처 조사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특히 형사절차만큼이나 자료 제출 압박이 강한 특허 분쟁이나 행정조사(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단계에서 변호인과의 의사소통, 변호인의 법률검토 자료를 보호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의 업무성과물은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 등까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Q4. 아직 변호인을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눈 대화도 보호되나요?

A4. 네, 보호됩니다. 개정안 제1항은 '의뢰인이 되려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상담 단계의 솔직한 의사소통이 수사기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지 않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 이 경우 Q5에서 말씀드리는 비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Q5.** 보호 대상이 되는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은 비밀일 것이 요구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 비밀성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A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당시, 모든 대화가 아니라 '비밀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제1항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의사교환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모든 의사교환이 아니라, ①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만 공유된 의사교환으로 ②의사교환 당시부터 ACP를 주장하는 시점까지 비밀성이 유지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이외 제3자에게도 함께 공개, 공유되었거나 이후 의사소통의 내용이 공개, 공유된 사정이 있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의 철저하고 체계적인 보안 관리가 향후 권리 행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은 비밀성 표시가 된 이메일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6.** 내부 의사소통 또는 비변호사인 외부인과의 의사소통 메일에 변호사를 참조(CC)에 넣으면 보호되나요?

**A6.** 개정법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의사교환 내용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당 의사교환의 당사자가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외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에 형식적으로 변호사를 참조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Q7.** 공동 변호인끼리 의사교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괜찮나요?

**A7.**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공동방어특권(Common interest Doctrine)'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통의 방어 전략 수립을 위해 변호사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이를 '비밀의 유출(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유사한 방향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Q8.** 회사가 의뢰인인 경우 법무팀 직원, 사내변호사, 외부 회계사나 컨설턴트 등이 의사교환에 참여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나요?

**A8.** 현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향후 추가 입법이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소통이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자(need to know) 또는 회사를 위하여 발언하거나 행동할 권한을 가진 종업원'에게만 공유된 경우에는 비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변호사와 사외변호사를 구별하지 않고,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모두 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ACP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외부 회계사나 컨설턴트가 관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3자가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주체가 아니라 변호사의 법률자문 제공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정리, 전문적 정보의 해석 또는 전달 등 기능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 참여 범위가 변호사의 지휘·통제 하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주로 사업적 판단이나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거나, 변호사의 법률자문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ACP를 부정하는 경향입니다.

**Q9.**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이른바, 변호사 쇼핑)을 받은 경우에도 모두 보호되나요?

**A9.**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제1항)은 비밀성이 유지되는 한 보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밀성이 부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제2항)는 수임 이후 작성된 문서만 보호대상이므로 선임 이전에 작성된 자료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Q10. 보호되는 의사소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예를 들면, 이메일과 첨부파일)**

**A10.** 기존에 작성된 문서나 객관적 증거물은 변호사에게 송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CP의 보호를 받지는 못합니다. 이메일 본문은 비밀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항으로, 첨부서류가 변호사가 수임 후 작성한 문서라면 제2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역시 기존 문서(pre-existing documents)는 ACP 대상이 아니지만, 변호사의 검토 과정에서 형성된 법률적 판단이나 전략이 반영된 경우에는 소송준비자료특권(work product doctrine)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변호사의 의견(opinion)이 포함된 경우 더욱 강한 보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11. 변호사에게 사안 설명을 위해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는 의사교환으로서 보호되는 범위에 포함되나요?**

**A11.** 미국에서도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것이지 의사소통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증거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첨부 파일들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법제에서도 의사교환 내용을 넘어서는 첨부 파일까지 보호되지는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이나, 변호인 조력의 실질화 측면에서 의사교환과 분리할 수 없는 자료의 경우에는 보호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12. 변호사에게 송부한 자료라면 무조건 압수수색으로부터 안전한가요?**

**A12.**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호의 근거가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 **기존** : 형사소송법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가 '보관'중인 물건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었으나, 수사기관이 '증대한 공익'을 내세우거나 의뢰인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하는 경우 방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변경** : 이제 자료의 보관장소와 무관하게(로펌 보관 혹은 기업 내부 보관) '변호사와 주고받은 비밀 의사교환(제1항)'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제2항)'에 해당하면 비공개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은 '의사교환'과 '변호사의 업무성과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무관하게 이미 사내에서 작성, 생성된 자료를 변호사에게 송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13.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검토 의견서'는 언제부터 보호되나요?**

**A13.** 법률 검토 의견서가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의사교환 내용에 해당한다면 이는 정식 수임 전에 작성된 것이라도 보호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 검토 의견서가 제2항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성과물에 해당한다면, 법률 규정상 제1항과 달리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일 것으로 요하므로, 정식 수임 이후부터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이 적용되는 이상 '비밀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보호범위가 두텁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Q14.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라면 어떠한 내용의 서류라도 보호되는 것인가요?

A14. 제2항이 보호대상으로 정하는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는 규정 상 수임 이후 소송, 수사,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입니다. 입법 과정의 논의에 비추어, 소송 수행 등을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거나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여 기재한 자료, 즉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자료 또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중이거나 목전에 도래한 소송, 수사, 조사 등이 없는 상태에서 향후 제기될 법적 분쟁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의 경우에도 보호대상이 될지 여부는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수임한 사건**'의 해석 및 인정 범위에 대해 판례 등을 통한 보충이 필요합니다.

다만, Q13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가 제1항의 의사교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비밀성 요건 등을 갖추면 소송, 수사, 조사 등의 계속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Q15. 조사에 대비하거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기록한 자료, 조사 후 조사 내용을 복기한 자료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나요?

A15. 제2항이 정하는 소송, 수사,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 Q16.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등은 비밀이 아니더라도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A16. 제2항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수임 이후 작성할 것이라는 요건 외에 비밀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인터뷰 등은 의뢰인 외에 제3자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비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 Q17.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2항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요?

A17. 정부측 제시안에는 제2항의 업무성과물과 관련하여, “공개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고, 서류나 자료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하는 단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3항에 이미 일반적인 예외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2항에 다시 별도의 단서를 둘 경우 ACP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어 최종 개정안에는 위 단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단서 규정의 삭제는 형사절차보다는 특허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비형사 절차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생협력법에는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보호되는 자료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역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절차에서도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ACP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 범위와 적용 방식은 향후 추가 입법 및 법원의 해석을 통해 보완·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Q18.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와의 의사교환 및 사내변호사의 업무성과물에도 ACP가 적용되나요?**

**A18.** 명시적인 규정 및 확립된 해석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나, 법률자문 과정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ACP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내변호사와의 의사교환 역시 비밀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범위에 사내변호사의 고용주인 회사 및 그 소속 임직원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향후 입법 또는 판례를 통해 보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내변호사가 작성한 업무성과물의 경우, '수임한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수임'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고용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제외할 경우, 사내변호사가 작성한 업무성과물은 제2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조사절차에관한규칙』제11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준법지원부서(법무·컴플라이언스 부서)를 조사대상 부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 신설 이후 사내 법무팀이 제공한 법률의견서가 현장조사 영치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사내변호사와의 의사교환 및 업무성과물에 대하여 ACP의 근본 취지와 공정거래 분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적극적인 보호를 주장하는 한편, 사내변호사만이 포함된 의사교환의 경우에도 비밀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문서 관리 및 접근 통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19. 예외 사유인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 의사교환 내용이나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혐의의 중대성도 포함되나요?**

**A19.** 제3항 제2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12조 및 제149조의 단서를 유지한 것으로, 현재도 단순히 혐의가 중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와 공범일 가능성 또는 변호사가 증거인멸을 알고 있거나 가담하였을 가능성 등의 사유와 함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원은 유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전단계인 압수수색 또는 조사 현장 등에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여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의뢰인의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래에 예정된 위법행위와 관련된 경우'로 예외를 한정하고 있고, 수사 중인 혐의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ACP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Q20. 민사법원 등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도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A20.** 제3항 제4호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ACP에 대한 예외를 특별히 명시한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소송 법상 일반적 규정인 문서제출명령만으로 곧바로 ACP의 적용이 배제되고 제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CP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되고 법안 논의 과정에서 *in camera* 제도(당사자와 배심원이 아닌 법관만 열람하고 판단)의 도입 필요성 등이 논의된 만큼 향후 법개정 등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21.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ACP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수하려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1.** 이번 개정안에는 ACP 위반 시의 제재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1차적 판단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현장에서 ACP를 이유로 압수수색 자체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식은 현재의 실무와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현장에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후 준항고를 통해 다투며, 나아가 기소 이후에는 해당 자료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증거능력 부존재를 주장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ACP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신설된 만큼, 향후 준항고 인용이나 증거능력 배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종전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미 해당 자료의 내용을 인지하여 편견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적 구제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분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 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해당 자료가 ACP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관리하는 실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Q22. 현재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디스커버리에 서도 ACP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A22.** 네, 맞습니다. 정부 측 원안이 앞서 언급한 단서 규정을 두었던 이유 역시,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일방 당사자가 ACP를 주장할 경우 그로 인해 증거 개시 대상이 제한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 Key Takeaways

### 1. 이것만은 꼭!

- **사상 첫 법제화** : ACP가 처음으로 명문에 규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권리 확립** : ACP는 변호사의 권리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압수수색 등 절차에서 비공개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이 명확해졌습니다.
- **실무적 변화의 핵심** : 법률 검토서 등 변호사의 업무성과물이 대상에 포함되어 수사 및 행정조사(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실무관행의 변화 : 무엇이 달라지나?

- **수임 전(형사사건 개시 전) 상담 보호** : 정식 수임 이전의 상담 내용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초기 단계부터 보다 깊이 있는 법률적 소통과 전략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방어력 강화** : 의뢰인은 '변호사 자문 자료'라는 이유로 당당히 비공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조사 대응력 제고** : 특히 분쟁, 공정위 조사 등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전략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기업 운영의 자율성과 방어권이 강화됩니다.

### 3. 기업을 위한 대응 전략 (Action Plan)

- **사전 준비** :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및 작성 서류에도 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일(공포 후 1년) 이전에 전문가와 협의하여 ACP 대상 문서를 선별·정리하고, 내부 규정 및 압수수색 대응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서 관리 및 라벨링 구축** : 변호사와의 의사교환 자료 및 법률 검토 서면에는 ACP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전자파일의 경우 파일명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유 범위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에게 참조를 걸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전문가 조력의 일상화** : ACP 범위를 둘러싼 해석을 두고 수사기관 등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수사 절차 개시 이전 단계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문서 작성 및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보호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 <참고자료>

#### 미국의 ACP 제도

미국은 판례를 통해 ACP를 형성하여 왔으며, 연방증거법 제502조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ACP가 common law에서 오래전부터 인정되는 전통적인 특권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완전하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ACP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로부터
-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 그 목적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일 것
- 의뢰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
- 비밀을 전제로 진행되었을 것
- 의뢰인 또는 해당 법률전문가에 의한 공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
-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영구적인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뢰인의 의사가 존재할 것
- 그 비닉특권이 포기(waiver) 되지 않았을 것

미국은 구두 대화뿐만 아니라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회의 의사록 등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 AC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조언과 무관한 단순한 비즈니스 조언이나, 변호사를 참조(CC)에만 포함한 이메일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은 또한 사내변호사와 사외변호사를 구분하지 않으며,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도 미국 변호사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기능을 하고 해당 외국법 하에서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 ACP가 적용됩니다.

특권의 포기와 관련하여, 미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ACP가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 임의로 공개한 경우 (예 : 위임관계가 없는 제3자와 공유)
- 부주의하게 공개한 경우 (예 : 공개되는 문서에 부주의로 섞임)에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다만, 포기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만 미치고, 예외적으로 포기가 의도적이고 동일한 사안(subject matter)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공평한 경우에만 다른 커뮤니케이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ACP의 예외 사유로는 **범죄-사기 예외(crime-fraud exception)**가 있습니다. 즉,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래 행할 예정인 위법행위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에는 ACP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쟁 사안에 관하여 변호사로부터 얻은 조언을 항변(advice-of-counsel defense)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ACP가 상실됩니다.

실무적으로 미국은 '프리빌리지 로그(privilege log)'라는 비밀대상 물건 일람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ACP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부서가 판단하고, 더 다투는 경우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